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557 |
|----------|------|

발의연월일 : 2024. 9. 25.

발의의원 : 이연숙 의원,

서도원 의원, 양은숙 의원

1. 제안이유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미숙아에 대한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여 미숙아 양육에 대한 보호자 부담 경감과 미숙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지원사업 및 접종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중복지원의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숙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숙아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2. “보호자”란 미숙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미숙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숙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숙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미숙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2. 그 밖에 미숙아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접종비 지원 및 신청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군수는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지원한 금원을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종비 지원금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제1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영유아에 대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로 한다.

1. 영유아 기준

가. 임신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로서 접종일 현재 출생 후 12개월 이내인 영유아

나. 지원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

2. 보호자 기준

가. 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출생일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면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시설의 장

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영유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군수가 그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자로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접종비 지원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접종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적격성과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같은 사유에 따른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되,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체없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환수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모자보건법(법률)」(2024.2.6. 일부개정, 2024.8.7.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2024.2.6. 일부개정, 2024.8.7. 시행)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10.31. 제정 2024.7.19.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가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임신부를 보호하는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해당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가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